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張半徑)”을 “(長半徑)”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1조제2항”을 “법 제11조제3항”으로, “별표 3과”를 “별표 3의2와”로 한다.

-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별표 3에서 정한 지형·지물을 조사하여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제58조제12호가목 중 “석유·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석유·석유제품, 액화석유가스, 전기 또는 수소”로 하고, 같은 조 제23호 중 “카누장, 산림 안의 야영장”을 “카누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4호 중 “수영장·유선장(遊船場)·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경마장”을 “수영장·유선장(遊船場)·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경마장·야영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8호가목 중 “야외시장, 비행장”을 “야외시장”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영구적 건축

물 중 변전소”를 “변전소”로,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을 “송유시설”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폐차장 등 자동차 관련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

라.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부지

마. 도축장,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바. 그 밖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제64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토지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받은 후 신청하여야 한다.

제6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66조제3항제2호 중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을 “필지가 서로 연결하지 않은”으로 한다.

제88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부지사”로, “행정부시장”을 “부시장”으로 한다.

제101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제10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법 제11조제

1항”을 “법 제11조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0호를 제6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5조에 따른 측량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60. 제104조제12항에 따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제104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별표 3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통보하여야 하는 지형·지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표 3의2로 하고, 같은 표(중전의 별표 3)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란 다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며, 같은 표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란 라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표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란 마목 중 “「보증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표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란 바목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로 하며, 같은 표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란 마목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를 “「연

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표 제3호의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란 나목 본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하며, 같은 표 제7호의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란 중 “「항공법」 제2조제10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표 제8호의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란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를 “같은 법 제2조제5호”로 한다.

별표 3의2(중전의 별표 3) 제10호의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란 나목 중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5호”를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3호”로, “공원집단시설지구”를 “공원마을지구”로 하고, 같은 표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란 다목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하며, 같은 표 제11호가목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의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란 나목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3호”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3제5호”로 하며, 같은 표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란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인천국제공항의 개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목 중 이 시행령에 의하여 주유소용지·유원지 또는 잡종지로 될 토지는 3년 이내에 지적소관청이 조사·측량하여 해당 지목으로 바꾸어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토지표시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중에 토지의 이동에 따른 지적공부정리를 하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목 중 이 영에 의한 주유소용지·유원지 또는 잡종지로 되는 토지에 관하여는 이 영에 의한 지목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세계측지계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세계측지계(世界測地系)는 지구를 편평한 회전타원체로 상정하여 실시하는 위치측정의 기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회전타원체의 장반경(張半徑) 및 편평률(扁平率)은 다음 각 목과 같을 것 가. 나. (생략) 2. 3. (생략) ②·③ (생략)	제7조(세계측지계 등) ①	----- ----- ----- ----- -----.	----- ----- ----- ----- -----.
제11조(지형·지물의 변동사항 통보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형·지물의 변동사항 통보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가 통보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는 별표 3과 같다.	제11조(지형·지물의 변동사항 통보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별표 3에서 정한 지형·지물을 조사하여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1조제3항	----- ----- ----- ----- -----
				별표 3의2와 -----

제14조(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별표 4의 기준을 갖춘 기관으로서 측량 관련 인력과 장비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 4. (생략)

<신설>

② ~ ④ (생략)

제58조(지목의 구분)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 11. (생략)

12. 주유소용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자동차·선박·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

제14조(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진흥원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8조(지목의 구분) -----

-----.

1. ~ 11. (현행과 같음)

12. -----

-----.

가. 석유·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 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제외한다.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遊船場)
· 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

가. 석유·석유제품, 액화석유가스, 전기 또는 수소 --

카누장

수영장 · 유선장(遊船場)
· 낚시터 · 어린이놀이터 · 동

물원 · 식물원 · 민속촌 · 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박시설 및 유기장(遊技場)의 부지와 하천 · 구거 또는 유지[공유(公有)인 것으로 한정한다]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25. ~ 27. (생략)

28. 잡종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나.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다.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물원 · 식물원 · 민속촌 · 경마장 · 야영장 -----

-----,

-----.

25. ~ 27. (현행과 같음)

28. ----

-----,

-----.

가. -----

----- 야외시장-----

나. 변전소-----
----- 송유시설

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자동

<u>토지</u> <u><신 설></u> <u><신 설></u> 제64조(등록전환 신청)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 설></u> ③ (생략) 제65조(분할 신청) ① 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u><단서 신설></u>	<u>차 운전학원, 폐차장 등 자동차 관련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u> <u>라.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부지</u> <u>마. 도축장,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u> <u>바. 그 밖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u> 제64조(등록전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3. (현행과 같음) <u>4.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u> ③ (현행과 같음) 제65조(분할 신청) ① ----- ----- -----. <u>다만, 관계 법령에서 토지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받은 후 신청하여야 한다.</u>
--	--

1. · 2. (생 략) 3. <u>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분할</u> <u>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 등을</u> <u>받은 경우</u> ② (생 략) 제66조(합병 신청) ① · ② (생 략) ③ 법 제80조제3항제3호에서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 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 한다. 1. (생 략) 2. 합병하려는 각 <u>필지의 지반</u> <u>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u> 3. ~ 6. (생 략) 제88조(지방지명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시·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장 은 <u>행정부지사</u>(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u>행정</u> <u>부시장을 말한다)가 되고, 위원</u> <u>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u> <u>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u> <u>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u>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제66조(합병 신청) ① · ② (현행 과 같음) ③ ----- ----- ----- ----- ----- -----. 1. (현행과 같음) 2. ----- <u>필지가 서로</u> <u>연접하지 않은</u> ----- 3. ~ 6. (현행과 같음) 제88조(지방지명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부지사</u>----- ----- <u>부시</u> <u>장</u>----- ----- ----- -----
--	--

위촉한다.

③ ~ ⑤ (생략)

제101조(연구기관) 법 제9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1. ~ 5. (생략)

<신설>

제103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1. (생략)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3. ~ 8. (생략)

9.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형·지물의 변동사항 통보의 접수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 착공사실, 지형·지물 변동사항 통보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본측량자료의 제출 요구

10. ~ 59. (생략)

<신설>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1조(연구기관) -----

-----.

1. ~ 5. (현행과 같음)

6.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제103조(권한의 위임) ① -----

-----.

1. (현행과 같음)

2. 법 제5조에 따른 측량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3. ~ 8. (현행과 같음)

9. 법 제11조제2항-----

----- 제3항-----

----- 제4항-----

10. ~ 59. (현행과 같음)

60. 제104조제12항에 따른 측량

<u>60.</u> (생 략) ② (생 략) 제104조(권한의 위탁 등) ① ~ ⑪ (생 략) <u><신 설></u>	<u>성과 심사수탁기관에 대한 지</u> <u>도 · 감독</u> <u>61.</u> (현행 제60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4조(권한의 위탁 등) ① ~ ⑪ (현행과 같음) <u>⑫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u> <u>또는 지적소관청은 법 제105조</u> <u>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u> <u>기관에 대하여 지도 · 감독하여</u> <u>야 한다.</u>
--	---

【별표 3】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통보하여야 하는 지형·지물의 종류

(제11조제1항 관련)

구분	종류
1. 건축물의 신축, 증축, 철거, 멸실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노인 및 어린이)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도로의 신설, 확장, 개량, 폐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시행으로 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변동사항을 통보한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3. 명칭의 신설, 변경, 폐지	가. 「정부조직법」에 의한 행정기관 및 부속기관 나.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 정부공기업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별표 3의2】

현행(별표3)		개정안(별표 3의2)	
지형·지물의 변동을 유발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지형·지물의 변동을 유발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제11조제3항 관련)		(제11조제3항 관련)	
구분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구분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1. 도시의 개발	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1. 도시의 개발	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중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중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사업 1) 운하 2) 유통업무설비로서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주차장시설로서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시장으로서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사업 1) 운하 2) 유통업무설비로서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주차장시설로서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시장으로서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중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중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보급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급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중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급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중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공		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

	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중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 중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아.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중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의 설치공사 중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차.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 및 제55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및 농어촌마을 재개발사업 중 택지조성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배송센터 조성사업 중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 중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아.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중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의 설치공사 중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차.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 및 제55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및 농어촌마을 재개발사업 중 택지조성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설립으로서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공업용지 조성사업 중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중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사업 중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설립으로서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공업용지 조성사업 중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중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사업 중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3. 항만의		3. 항만의
	가.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어항시설 또는		가.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어항시설 또는 어항개발사업 중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면매

건설	어항개발사업 중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조성면적 중 매립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항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건설공사 중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조성면적 중 매립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항만시설의 건설사업 중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조성면적 중 매립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4. 도로의 건설	「도로법」 제2조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으로서 길이 1킬로미터 이상의 도로건설사업
5. 수자원의 개발	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또는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하구둑의 설치공사로서 만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만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보 또는 유지의 조성
6. 철도 (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의 건설사업 중 길이 1킬로미터 이상이거나 철도시설의 면적이 5
	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조성면적 중 매립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건설공사 중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조성면적 중 매립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항만시설의 건설사업 중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조성면적 중 매립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4. 도로의 건설	「도로법」 제2조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으로서 길이 1킬로미터 이상의 도로건설사업
5. 수자원의 개발	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또는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하구둑의 설치공사로서 만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만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보 또는 유지의 조성
6. 철도 (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의 건설사업 중 길이 1킬로미터 이상이거나 철도시설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

	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건설사업 중 길이 1킬로미터 이상이거나 도시철도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또는 같은 조 제9호의 전용궤도의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이거나 궤도용지(궤도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의 건설사업 중 길이 1킬로미터 이상이거나 철도시설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7. 공항의 건설	「항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중 다음 사업 1) 비행장의 신설 2) 그 밖의 공항개발사업으로서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8. 하천의 이용 및 개발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에서의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하천공사 중 그 공사구간이 하천중심길이로 1킬로미터 이상인 것
9.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중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척사업 또는 개간사업 중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관광단지의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를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건설사업 중 길이 1킬로미터 이상이거나 도시철도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또는 같은 조 제9호의 전용궤도의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이거나 궤도용지(궤도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의 건설사업 중 길이 1킬로미터 이상이거나 철도시설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7. 공항의 건설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중 다음 사업 1) 비행장의 신설 2) 그 밖의 공항개발사업으로서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8. 하천의 이용 및 개발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에서의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중 그 공사구간이 하천중심길이로 1킬로미터 이상인 것
9.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중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척사업 또는 개간사업 중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관광단지의 개발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중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개발	의 조성사업 중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원사업 중 조성면적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u>공원마을지구</u> 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u>도시계획사업</u> 중 유원지에 설치되는 시설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u>도시·군계획사업</u> 중 유원지에 설치되는 시설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u>공원시설</u> 의 설치사업 중 공원시설 면적의 합계가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u>공원시설</u> 의 설치사업 중 공원시설 면적의 합계가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11. 특정 지역의 개발	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u>지역종합개발사업</u> 중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11. 특정 지역의 개발	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u>지역개발사업</u> 중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u>경제자유구역</u> 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3제5호에 따른 <u>경제자유구역</u> 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다.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u>신공항건설사업</u>		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u>인천국제공항</u> 의 개발
12. 체육 시설의 설치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u>체육시설</u> 의 설치공사 중 총용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12. 체육 시설의 설치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u>체육시설</u> 의 설치공사 중 총용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u>경륜 또는 경정시설</u> 의 설치사업 중 총용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u>경륜 또는 경정시설</u> 의 설치사업 중 총용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u>청소년수련시설</u> 의 설치사업 중 총용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u>청소년수련시설</u> 의 설치사업 중 총용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u>경마장</u> 설치사업 중 총용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u>경마장</u> 설치사업 중 총용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13.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u>폐기물처리시설</u> 중 매립시설의		

처리 시설의 설치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13.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연 락 처	(044) 201-3481